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시행 2022. 12. 2.] [환경부고시 제2022-231호, 2022. 12. 2., 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증금대상사업자)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처리지원금의 단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231호,2022.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동 지역): 2022년 12월 2일
2. 제1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

■ [별표 1]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제2조 관련)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

	사업자명	영업포지(브랜드)
1	(주)비브라더스	감성커피
2	(주)공오일	카페051(cafe051)
3	(주)공차코리아	공차
4	(주)뉴욕핫도그앤커피	뉴욕핫도그앤커피
5	(주)다날에프앤비	달콤
6	(주)다도글로벌	드롭탑(DROPTOP)
7	(주)달리는커피코리아	달리는커피
8	(주)더벤티코리아	더벤티
9	(주)더본코리아	백다방
		백다방메이커리
10	(주)더쉐프, (주)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11	(주)만랩	만랩커피
12	(주)맘스터치앤컴퍼니	맘스터치
13	(주)매머드커피랩	매머드커피(Mammoth Coffee)
		매머드익스프레스(Mammoth Express)
14	(주)맥스원이링크	셀렉토커피
15	(주)메가쓰리팝	엑스오엑스오 핫도그앤커피
16	(주)벌크커피	벌크커피(BULK COFFEE)
17	(주)봄봄	봄봄테이크아웃(봄봄TAKE-OUT)
18	(주)비케이알	버거킹(Burger King)
19	(주)비케이컴퍼니	아마스빈
20	(주)스토어하우스	아마스빈코리아
21	(주)샤마	코코호도
22	(주)앤하우스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23	(주)에스앤큐플러스	토프레소
24	(주)현진홀딩스	요거프레소
25	(주)우주에프앤디	우주라이크(WOULDULIKE)
26	(주)이디야	이디야커피
27	(주)이랜드이츠	루고
		더카페
28	(주)재원푸드	앤티앤스
29	(주)컴포즈커피	컴포즈커피(COMPOSE COFFEE)

30	(주)진심코리아	진심커피
		더치앤빈
31	(주)칭자다방	칭자다방
32	(주)카페베네	카페베네
33	(주)커피베이	커피베이
34	(주)커피빈코리아	커피빈
35	(주)커피에반하다	커피에반하다
36	KFCAsiaHoldingsLLC	KFC
37	(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디초콜릿커피앤드
		할리스/할리스커피
38	(주)타이웨이	홍루이젠
39	(주)탐앤탐스	탐앤탐스커피(TOMNTOMS COFFEE)
40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잠바주스
		파스쿠찌
41	(주)팔공티	팔공티
42	(주)프로젝트비	고망고
		차얌
		팔팔핫도그
43	(주)하삼동	하삼동커피
44	(주)희천	더리터(THE LITER)
45	SubwayInternationalB.V.	씨브웨이(Subway)
46	롯데지알에스(주)	크리스피크림
		엔제리너스
		롯데리아
47	비알코리아(주)	던킨/던킨도너츠
48	스무디킹코리아(주)	스무디킹(SMOOTHIEKING)
49	씨제이푸드빌(주)	뚜레쥬르
50	엠즈씨드(주)	폴바셋
51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스타벅스커피
52	쥬씨(주)	쥬씨(JUICY)
53	투썸플레이스(주)	투썸플레이스
54	티에고(주)	커피마마
		커피마마퀸
55	한국맥도날드(유)	맥도날드
56	삼성물산(주) 에버랜드리조트	

※ 비고

1. 영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하며, 영업표지(브랜드)를 타 사업자에게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등을
법제처

한 사업자 및 위탁 등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

2.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매장 중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가. 면적이 10m² 미만인 매장

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무인으로만 영업하는 매장

다. 공항·항만의 보세구역 내 매장

라. 변(面) 지역 또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소재한 매장

3. 위 표의 영업표지(브랜드)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3)에 따라 고시한 영업표지(브랜드)로 본다.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영 제1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사업자 중 자발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사업자(시·도지사의 신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 [별표 2]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 단가(제3조 관련)

1.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 처리지원금 단가

처리지원금 단가 (개당)	구분	종이 재질의 컵	합성수지 재질의 컵	기타 재질의 컵
	표준용기	4원	4원	-
	비표준용기	10원	10원	10원

※ 비고: 표준용기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표준용기를 말한다.